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정 신 교*

목 차

- | | |
|--------------------|--------------------------|
| I. 서 론 | 3. 소결 |
| II. 범죄예방의 이론적 논의 | IV. 전자감시제도의 개선방안 |
| 1. 범죄예방의 이념 | 1. 전자감시대상 범죄의 확대 |
| 2. 지역사회 범죄예방 | 2. 전자감시 대상자의 추적확인 강화 |
| 3.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예방 | 3. 전자감시 대상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 |
| III. 전자감시의 범죄예방 효과 | 4. 보호관찰관 인력의 확충 |
| 1. 전자감시와 범죄예방 | V. 결 론 |
| 2. 전자감시의 적응효과 | |

I. 서 론

범죄예방은 범죄발생에 대한 억제를 위한 일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활동도 포함된다.¹⁾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흉악범의 출현은 우리 사회구성원에 대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녀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및 성폭행 사건은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국회는 경쟁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²⁾ 그 가운데 2007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최근 심각한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1)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NCPI),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Woburn, MA: Butterworth-Heinemann, 2001), 2쪽.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써 도입되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2009년 5월 일부개정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으로 약칭한다) 특정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여 외부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³⁾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으로 범죄자들에게 발찌형태로 된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감시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형사제도의 도입 수준을 넘어 전체 형사통제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효과성 검토와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전자감시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에 대한 재범 억제정책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2월 제정)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제정)상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년 1월 제정)상 화학적 거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년 7월 제정)상 범죄자 정보 등록 등이 있다.

3) 이 법의 제정배경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습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 있다(이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를 2차 개정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3차 개정에서 살인범까지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Ⅱ. 범죄예방의 이론적 논의

1. 범죄예방의 이념

1.1 범죄예방의 의의

범죄예방이란 범죄발생을 감소·억제·제거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⁴⁾ 범죄예방은 주로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공식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역공동체에 의한 비공식적 범죄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개인이나 지역의 범죄발생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공동체의 경우 범죄문제에 대하여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범죄양상은 흉포화·광역화·누범화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은 기존의 범죄억제를 위한 범죄자 처벌과 교정, 더 나아가 재화에 바탕을 둔 범죄자 처우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 후어야 개입하게 되는 범죄대책들은 궁극적으로 사후처리로서의 실질적인 범죄피해를 줄이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범죄예방은 잠재적 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

먼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지역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원인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예방은 범죄표적으로서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는 활동과 여건이 있다.⁶⁾ 여기에

4) 임창호,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137쪽.

5) 최인섭,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3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83쪽.

6) 최인섭, 위의 논문, 85쪽 이하.

는 기존의 범죄성향이론에 근거한 범죄인의 소질적인 요소들을 제거 혹은 개선하려는 방법보다 상황적으로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이 제시되고 있다.⁷⁾

1.2 범죄예방의 유형

1.2.1 형벌목적 사상과 범죄예방

형벌목적 사상과 범죄예방에서 일반예방은 일반국민의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범죄 및 범죄자를 진압함으로써 동시에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장래적인 범죄예방기능과 과거범죄에 대한 진압적 기능은 상호 배척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예방에는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적극적 일반예방은 법질서의 존립과 관철력에 대한 신뢰의 보존과 강화이다. 소극적인 일반예방은 오직 위하의 필요성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잠재적인 일반인을 위하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 속성상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⁸⁾

이처럼 소극적인 일반예방은 왜곡된 인간상을 상정하여 범죄화와 형벌기중화에 치중하고 있다. 특별예방은 일반인이 아닌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데 형벌의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화함으로써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별예방은 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형벌의 개별화, 단기자유형의 제한, 가석방·집행유예·선고유예의 활성화, 상습범의 특별취급 등이 있다.⁹⁾ 구체적으로 범

7) Clarke R,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Albany, NY: Harrow and Huston, Publishers, 1997), 4-10쪽.

8) 손동권, 형법총론 제2개정판(울곡출판사, 2006), 17쪽;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 개정판(형설출판사, 2010), 563쪽; 정영일, 형법총론 제3판(박영사, 2010), 24쪽; 김창균, “비범죄화의 실현방안”, 형사정책 제8권(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10쪽.

죄자로 하여금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재활, 개선, 직업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2 범죄예방의 분류

범죄예방의 세 가지 개념적 모형으로 나누어진다.¹⁰⁾ 첫째, ‘1차적 예방’(Primary Prevention)은 범죄를 발생시키는 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여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의 뿌리가 되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회적 범죄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차적 예방’(Secondary Prevention)은 범행 우려가 높은 자나 범죄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조기에 관리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가령 귀금속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를 강화하거나 심야시간에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 현금을 분산보관 함으로써 강도의 목표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¹¹⁾ 1차적 예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2차적 예방의 주된 관심은 범죄를 범할 경향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와 범죄를 수행할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셋째, ‘3차적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는 범죄자의 치료를 통해 범죄성을 약화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전통적으로 형사사법기관들이 주로 이 역할을 담당했다.

9) 손동권, 위의 책, 18쪽.

10) Brantingham, P/F. Faust,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제22호(1976), 284쪽.

11) 임준태, 범죄예방(대영문화사, 2009), 56-60쪽; 김상균/이승철, 한국사회와 범죄(청목출판사, 2008), 471쪽.

2.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2.1 지역사회의 유대강화

지역사회의 1차적 범죄예방 전략으로 지역사회의 유대강화가 있다. 대부분의 범죄는 개인에 의해 저질러지지만 범죄행위가 단순히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지역사회의 범죄통제 역량과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에 의하면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못하게 될 때 범죄는 증가하게 된다.¹²⁾ 지역사회가 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려면 우선 주민들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 친밀감과 결속력이 강화되면 견고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증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법은 극히 원자화되어 있는 도시인들과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도시의 지역사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래서 단순한 유대관계를 대신할 개념으로 ‘집단적 효능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의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순찰대를 조직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하거나 지역 주민회의를 통해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는 것과 같은 행동중심적인 접근법을 말한다. 또한 ‘이웃 감시’(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이 상호 간에 범죄의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¹³⁾ 지역수준의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12)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11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61쪽.

13) 임창호, 앞의 논문, 146쪽 이하.

2.2 상황적 범죄예방

상황적 범죄예방의 기본전제는 범죄를 범죄자적 배경과 범죄자적 속성을 가진 개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이론과는 달리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행위자로 보고 있다. 즉, 범죄는 범죄적 성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아닌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순간적인 선택과 결정의 결과로 보면서 모든 개인을 정상적인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¹⁴⁾ 따라서 환경변화를 통하여 인지되는 요소를 통하여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상황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특징은 첫째, 특정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설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며 셋째, 잠재적 범죄자들에 의해 인식되는 검거의 위험성 및 범행의 어려움을 증진시키며 넷째, 보상이나 범죄의 명분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¹⁵⁾ 주거 단지를 설계할 때 출입경로를 제한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숫자를 최소화하며 막다른 길을 곳곳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학교 안이나 통학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보도블록의 색깔을 주변의 인도와 차별하는 것도 외부인이 학교에 접근하는 경로를 통제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지역사회 내의 감시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가로등과 CCTV의 설치가 있다.¹⁶⁾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력을 확대는 잠재적인 범행의 기회를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억제하는 역할

14) Hughher, G, *Understanding of Crime Prevention*(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8), 15-22쪽.

15) Larry, J, Siegel, *Criminology* 5th(West Publishing Company, 1995), 116쪽.

16) 최응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151-153쪽.

을 한다. 감시성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역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전망’(prospect), 범죄자가 잠재적 피해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의 유무를 의미하는 ‘피신’(refuge), 범행 후 범죄자가 그 장소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는 ‘탈출’(escape)이 있다. 예컨대 가로등은 가시성이 제한되는 야간에 전망 수준을 높이고 범죄자가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키며 범행 후라도 범죄자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여 범행 장소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CCTV는 설치장소와 방법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을 보거나 좁은 지역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지역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으며 범죄자의 도주경로를 추적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2.3 사회적 · 경제적 범죄예방

지역사회 차원에서 범죄의 사회적 · 경제적 원인들을 해결 또는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사회는 범죄의 온상이 되며 동시에 범죄피해의 주된 대상이 된다. 또한 소득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할 경우 사회적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지면 지역사회 내에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¹⁷⁾ 따라서 1차적 예방은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빈곤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범죄의 보다 근원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다른 범죄예방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17) 박상기/손동권/이순래, 앞의 책, 221쪽.

지역사회 수준의 2차적 예방으로는 먼저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성이 높은 개인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개입 프로그램은 대개 아동의 행동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과정에서 지능이나 과제수행능력이 낮고 인지적·행동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정식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문제해결방법, 대인관계기술, 자기통제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의 행동장애나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이 가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정을 대상으로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교육기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법, 가족관계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다른 지역사회 수준의 2차 예방 전략은 범죄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그냥 방치하면 주민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쇠퇴하게 되면 결국 범죄가 증가한다고 한다.¹⁸⁾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나뉜다. 물리적 무질서는 길가에 있는 쓰레기더미, 벽에 마구 그려진 낙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빈 건물 등의 환경적 요소를 말한다. 사회적 무질서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불량배들, 고성방가나 무단방뇨와 같은 행위들, 과도한 호객행위 등이 그 예이다. 지역사회에 이러한 무질서가 팽배하면 머지않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 전략이 된다.

3차적 예방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다가 출소하여 지역사회

18) Wilson, J. Q./Kelling, G. L., “Broken Windows: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제249호(1982), 29-32쪽.

로 다시 복귀하는 전과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처벌위주의 형사정책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자가 급증하였다가 이들이 대거 출소하여 지역사회로 되돌아오게 되자 전과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reentry program)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마친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건전한 지역주민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 취업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과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각각의 전과자를 담당하여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등 사회복귀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과자의 근황과 동태를 살펴서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능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3. 형사 사법기관의 범죄예방

공식적 범죄예방 활동의 주체는 형사사법기관이다. 현대의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체포하고 법규를 위반한 자를 소환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영장을 집행하는 등 형사에 관련된 사법행위를 한다. 그 중에서도 경찰은 1차적 예방과 2차적 예방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3.1 경찰의 1차적 범죄예방 활동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유발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자 및 범죄에 대한 공포(두려움)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비공식적인 범죄통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먼저 경찰의 1차적 범죄예방 활동으로 순찰활동을 들 수 있다.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런던 시경을 창설할 때 경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순찰은 경찰의 핵심적 활동으로 여겨져 왔다.¹⁹⁾ 특히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의순찰이 강조된다. 이는 경찰이 무작위로 지역을 선정하여 순찰을 하면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서는 경찰이 어디에서 감시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억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논리이다. 순찰은 범죄예방효과 외에 일반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특히 미국 뉴욕(New York)시의 도보순찰 실험 결과가 보여주듯이 차량순찰보다는 도보순찰이 경찰관과 주민 간의 대면접촉을 증가시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두 번째로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시하여 1차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경찰은 지역사회가 자체적인 비공식적 범죄예방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경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방법회의를 개최하여 범죄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치안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²¹⁾ 이는 부족한 경찰자원을 보충하고 지역치안을 주민과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민으로 구성된 순찰대를 운용하거나 주민을 범죄 관련 정보

19) 임준태, “경찰작용의 본질과 서비스한계”, 한국경찰연구 제1권 제1호(한국경찰발전 연구회, 2002), 15쪽.

20) 윤일홍/정진성, “한국경찰의 성과주의 도입과 그 시사점—뉴욕경찰의 킴스렛과 시행결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0호(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196쪽.

21) 임준태,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억제적 효과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4호(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165쪽.

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하겠다.

3.2 경찰의 2차적 범죄예방 활동

경찰이 실시하는 2차 예방 활동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이 있다. 기존의 경찰활동이 범집행에만 치중함으로써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범죄나 무질서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²²⁾ 이를 위해서 문제의 징후들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순찰의 방법도 기존의 임의순찰에서 집중순찰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무작위로 순찰인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정밀한 범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나 신고의 시간적·공간적 집중현상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에 맞게 순찰을 배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범자에 대한 관리도 경찰이 실시하는 중요한 2차 예방 활동이다.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전과자나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관리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가 재차 반복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활동도 2차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범죄피해가 일부 개인이나 가정, 건물 등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피해자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3 경찰의 3차적 범죄예방 활동

사법기관의 3차적 예방 활동은 법원, 교정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에서

22) 임준태, 위의 논문, 165쪽.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원이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고 교정국이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응보의 성격도 있지만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²³⁾ 인신을 감금하는 처벌은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여 아예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범죄자를 교화하여 출소 후 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3차적 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에 대해 일정기간 관찰과 감시를 실시하여 재범을 예방한다. 이 밖에 최근 일련의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도 사법기관에 의한 3차적 예방 활동에 속한다고 하겠다.

Ⅲ. 전자감시의 범죄예방 효과

1. 전자감시와 범죄예방

위험사회에서의 경찰활동은 범법자를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가려내어 적절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에 바탕을 두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현대의 감시사회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는 그 위험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다양한 감시통제방법이 사용되고 있다.²⁴⁾ 그 중에서 전자장치에 의한

23) 임준태, 위의 논문, 166쪽.

24) Brian K. Payne/Randy R. Gainey, "Is Good-time Appropriate for Offenders on Electronic Monitoring? Attitudes of Electronic Monitoring Directo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제28권(2000), 497-506쪽.

위치추적의 경우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보안처분적 성격²⁵⁾을 갖는 제재이기는 하나 개인의 인권침해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이러한 문제는 사생활보호와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한 균형을 찾아야 하고 남용의 문제가 있다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권침해와 범죄방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2. 전자감시의 적용효과

2.1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제정 이후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582명 중 동종 재범자는 1명으로 동종 재범률이 0.17%에 불과하였고 이종 재범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이는 일반 성폭력

25) 이에 대하여 독립적인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로(Turner/Hess/Myers/Shan/Werth/Whitby,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2007), 24-27쪽)과 형벌과 보안처분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는 견해로(박상열,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교정연구 35호(한국교정학회, 2007), 92쪽;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 부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235쪽; 최인습/진수명,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형사정책연구원, 1997), 37쪽; 한영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사회과학연구 제8권(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149쪽;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366쪽) 등이 있다.

26)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278쪽.

27) 법무부 보도자료, 2010. 3. 31; 위의 자료에 의하면 전자감시제도의 범죄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그 역사가 3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범죄자 재범률 14.8%에 비하면 매우 높은 재범억지력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 제정 당시 전자부착장치의 대상을 특정성범죄 자에게만 국한했던 것을 제2차 개정법률(2009년 8월 9일 시행)에서 미성년자대상 유괴범죄를 추가하였고 제3차 개정법률(2010년 7월 16일 시행)에서 살인죄에까지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부착장치 대상범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2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노포크 시(Norfolk)에서 통행금지 전자 감시명령을 받은 범죄자들과 통행금지 명령만을 받은 사회내처우 대상자들의 재구속수감률을 비교한 결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²⁸⁾ 플로리다 교정당국과 플로리다 주립대가 공동으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플로리다 주의 전자감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전자감시의 범죄예방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이다.²⁹⁾ 즉 전자감시가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연구 설계의 한계가 가지는 모순된 것일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1990년에 모든 주에서 전자감시제도를

28) Renzema, Marc/Evan Mayo-Wilson, "Can electronic monitoring reduce crime for moderate to high-risk offender?",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 (2005), 215-230쪽.

29) Padgett, K.G./Bales, W.D./Blomberg, T.G., "Under Surveillance: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iveness and Consequences of Electronic Monitoring", *Criminology & Public Policy* 제5권(2006), 61쪽.

시행하고 있지만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한 범죄자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찰기간이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를 긍정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전자감시는 교도소에서 3~4년간 수감되었던 사람들에게는 범죄예방효과가 없지만, 전자감시를 받고 있던 128명 중 교도소에 다시 수감된 경우는 없었고, 75%인 97명이 아무런 범죄를 하지 않고 전자감시기간을 종료하였으며, 20%인 20명이 약간의 범죄를 일으켰으며, 5%는 심각한 범죄를 행한 것으로 발표하였다.³⁰⁾ 그리고 플로리다주 교정당국이 1993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0년간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한 6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자감시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이 조사의 변수는 대상자의 범죄유형, 범죄경력, 규정위반, 전자감시기간,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었다. 조사는 전자감시기간을 종료한 후 2년 동안 대상자를 추적조사(Follow-up Study)하는 즉, 종단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전자감시를 받지 않은 대상자가 전자감시를 받은 대상자보다 중범죄를 세 배 이상 행하였고(9.8% : 2.8%), 경미한 범죄를 두 배 이상 행하였고(3.5% : 1.3%), 처우 내 기간 동안 도망간 경우도 두 배 이상 많았다(16.1% : 7.0%). 또한 처우가 종료된 후 전자감시를 받지 않은 경우가 3배 가까이 범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에 대한 결과들이 상반되는 것은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단순히 전자감시제만을 적용해서는 범죄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전자감시와 병행한 부수적인 사회내처우의 적용 필요성을 보여준다.

30) Finn, Mary A./Suzanne Muirhead-Steves,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with violent male parolees", *Justice Quarterly* 제19호(2002), 293-312쪽.

3. 소결

감시는 개개인의 행동양식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푸코는 인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통제는 감시라고 하였다.³¹⁾ 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전자감시제도가 실시되어 이에 대한 효과성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감시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2010년 법무부 자료³²⁾에 의하면 부착대상자의 재범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전자감시제도의 범죄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그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발찌의 착용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형사제재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실효성이 높다고 하여 전자부착장치를 모든 범죄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면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위험의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와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된 범죄에 한하여 확대 실시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IV. 전자감시제도의 개선방안

1. 전자감시대상 범죄의 확대

1.1 단기자유형의 대체형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형벌은 모든 범죄자들을 일률적으로 시설 내에

31) 정신교, 앞의 논문, 281쪽.

32) 법무부 보도자료, 2010. 3. 31.

수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드러냈고 범죄자들을 사회와 단절시킴으로써 출소 후 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그러나 전자감시는 가택구금, 외출제한, 집중보호관찰 등 다양한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형사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³³⁾ 단기자유형은 비록 단기일지라도 자유박탈로 인한 심리적 충격, 사회와의 단절, 교도소에서의 악폐감염 등과 같은 자유형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단기형으로서의 특수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자유형을 대신하여 전자감시 재택구금이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³⁴⁾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3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이 선고될 경우 전자감시를 받으며 재택 구금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를 받는 자 중에는 음주운전자가 다수이고 폭행, 상해죄를 범한 자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단기자유형에 대체형벌로서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³⁵⁾ 생각건대 단기자유형의 선고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자유형을 전자감시 재택구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만 하다.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자유형을 대신 전자감시 재택구금과 같은 대체형벌을 이용한다면 실행율을 줄일 수 있고 과밀수용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

전자감시의 확대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보호관찰만으로 충분한 범죄자에 대하여 실시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더불어 사회내처우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자감시의 실시는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폭력적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시설수용을 통한

33) 정신교,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33쪽.

34)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45쪽

35) 한영수, 앞의 논문, 160쪽.

격리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1.2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부과조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행형당국이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전자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형법 제62조의 2와 제73조의 2는 집행유예하거나 가석방을 허가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행형당국이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더불어 전자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보호관찰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실형이 선고될 자에 대해서도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하는 조기석방이 가능해져 시설수용인원의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감시가 제재효과와 감시효과를 동시에 제고시켜주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확대적용 및 가석방시점의 조기화가 수월해진다. 그러나 전자감시는 형벌대체수단으로 활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단지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 될 때 오히려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가석방 대상자를 일찍 석방시키면서 전자감시를 한다면 적절한 제재와 함께 사회 안에서 재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전자감시 대상자의 추적확인 강화

2.1 위치추적 전자감시 장치의 문제점

2009년 미국 버지니아 주 폴스처지시 법원은 성폭행과 절도로 체포돼

형을 복역하다 보호관찰 조건으로 가석방된 후 또 다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데이비드 폴츠란(41)이란 피고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교정당국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인이 무려 3시간이나 피해자를 물색하러 다니는 동안에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모두 11건의 여성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까지 전자감시를 허술하게 하여³⁶⁾ 전자감시제도가 가지는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감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08년 11월 4일 경북 상주에서 전자감시 대상자가 차 배달을 나온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일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³⁷⁾ 두 사건은 사건당일 범인이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은 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나 범죄예방 경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GPS 시스템으로 전자감시 대상자의 소재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와 다른 이동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위치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위치추적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2 위치추적 전자감시 장치의 개선방안

현행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시행지침 제34조는 위치추적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경보와 주의경보로 구분하고, 각각 필요한 조치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험경고나 주의경보를 행할

36)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131014504343&p=newsis>, 검색일, 2011. 6. 20.

37)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101130267, 검색일, 2011. 6. 20.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접근 금지지역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평상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동경로를 중앙관제센터의 모니터링에서 발견하여 지역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하거나 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의 지침 제25조는 전자감시 대상자와 보호관찰관과의 대면접촉을 징역형을 종료한 이후 전자감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월1회 이상하고, 특별준수사항 및 피부착자 의무사항 위반 의심사유의 발생 시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6조는 보호관찰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개시 후 3월까지 월 4회 이상 대면접촉(월 2회 이상 현지출장 방식)하고, 개시 후 3개월경과 시에는 월 3회 이상 대면접촉(월 1회 이상 현지출장 방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전자감시의 기본취지가 사회내 처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관찰관이 매일 대상자를 접촉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 이후 대상자를 월 1회 이상 대면하는 정도로는 감시대상자에 대한 교정과 우리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자와의 접촉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병원치료 및 상담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는 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3. 전자감시 대상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

최근의 전자감시 유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극형 GPS시스템이다.³⁸⁾ 그러나 미국 플로리다 주 교정당국과 플로리다 주립

38) R. Carlisle, "Electronic Monitor as an Alternative Sentencing's Tool", *Georgia State Bar Journal* 제24권 제3호(1988), 135쪽; 적극형 시스템은 범죄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부착하여 송신기를 통한 신호가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원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대학교가 공동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를 평가·분석한 보고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 RF)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 RF시스템은 GPS시스템 보다는 전자감시 대상자 주변의 주민이나 사회가 교정당국에 덜 노출된다는 장점도 있다. 즉 경미한 범죄자 및 재범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자에게 활용하거나 GPS시스템을 적용하는 도중 규칙위반이 없는 모범적인 대상자에게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다. RF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장소 즉, 학교, 직장, 주거 등에 대상자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현행처럼 전자감시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전자감시에 사용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일정부분을 대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⁴⁰⁾ 전자감시를 교정의 연장, 즉 망의 확대(Net-Widening)를 적용할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지만, 전자감시가 국가의 구금시설이 아닌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자유형 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대상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비용부담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옳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을 현행처럼 특정 범죄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까지 확대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9) Padgett, K.G./Bales, W.D./Blomberg, T.G, 앞의 논문 91쪽.

40) 미국 미네소타주 교정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전자감시를 위한 지출이 662,000달러에 이른다고 한다(Minnesota Department of Correction, Electronic Monitoring of Sex Offender, Minesota: Minnesota Department of Correction, 1-5).

4. 보호관찰관 인력의 확충

현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서울보호관찰소 2층에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 모니터링 및 각종 위반경보에 대한 1차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담 보호관찰관은 각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의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하였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최초의 대상자 53명을 포함하여 연간 전자발찌 예상 부착자 수를 1,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달 가석방되는 성폭력범 숫자에 법원이 부착 선고를 내릴 숫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감시 대상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신규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직인력 증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자감시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다른 보호관찰 업무를 병행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국외의 경우 전자감시 대상자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을 확보하고 그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인력관리는 당연하다.

전자감시는 보호관찰관과 감시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호관찰관은 전자감시 대상자가 전자감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독하는 동시에 대상자와의 접촉을 통해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주는 등의 상담자 역할을 함으로써 대상자와의 유대감 및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전자감시 장치로 인하여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주변인들과의 교제 등에 제한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부담은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 감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의 채용 및 양성이 필요하며, 특히 향후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범죄가 다양해지고, 그 대상자도 증가할 것을 예상할

때 더욱 그렇다.

V. 결 론

1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정착을 한 전자감시제도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대표적인 전략이며, 향후 구금처우보다는 사회내처우를 국가교정시스템의 근간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제도의 시행 초기인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법을 정비하여 대상자에 대한 인권시비를 없애고, 현행처럼 특정 범죄자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를 비롯하여 일정한 형량을 마친 강력범에게도 적용하되,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플로리다 주의 경우처럼 전자감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법원의 전자감시 명령의 적극적인 선고, 보호관찰당국의 정책개발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처럼 모든 범죄자에게 GPS시스템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재범가능성, 교정성적, 직업, 전과경력 등을 고려하여 RF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전자감시 대상자의 이동을 아무리 잘 추적한다고 하여도 대상자가 평상시의 위치를 벗어난 경우나 접근금지지역에 접근한 경우 등의 경보 신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범죄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신호의 감지 및 대응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전자감시는 또한 수강명령이나 치료명령, 봉사명령, 직업훈련 등과 병과하여 대상자의 교정효과를 높이고, 이들의 사회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을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고용 등에 있어 불이익이나 지역주민의 편견 없는 관심도 대상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재활을 도울 수 있으므로 교정당국의 적절한 홍보도 필요하다.

(투고일 2011년 7월 2일, 심사일 2011년 8월 5일,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23일)

주제어 : 범죄예방, 전자감시, 보호관찰, 사회내처우, 위치추적장치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상균/이승철, 한국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8.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11판, 형사정책연구원, 2011.
- 손동권, 형법총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 개정판, 형설출판사, 2010.
- 정영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0.
- 최인습/진수명,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Clarke R,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Albany, NY: Harrow and Huston, Publishers. 1997.
- Hughher, G, *Understanding of Crime Prevent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8.
- Larry, J, Siegel, *Criminology 5th*, West Publishing Company, 1995.
-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NCPI),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Woburn, MA: Butterworth-Heinemann, 2001.

2. 논문

- 김창균, “비범죄화의 실현방안”, 형사정책 제8권,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박상열,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교정연구 제35호, 한국교

- 정학회, 2007.
- 박혜진, “소위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 임준태, “경찰작용의 본질과 서비스한계”, 한국경찰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경찰발전연구회, 2002.
- _____,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억제적 효과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보 제1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 임창호,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 윤일홍/정진성, “한국경찰의 성과주의 도입과 그 시사점－뉴욕경찰의 컴스텟과 시행결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 _____,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최인섭,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3호, 형사정책연구원, 1994.
- 최응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 한영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사회과학연구 제8집,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 Brian K. Payne/Randy R. Gainey, “Is Good-time Appropriate for Offenders on Electronic Monitoring?” Attitudes of Electronic Monitoring Directo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제28호, 2000.

- Brantingham, P./F. Faust,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제22호, 1976.
- Carlisle R, "Electronic Monitor as an Alternative Sentencing's Tool",
Georgia State Bar Journal 제24권 제3호, 1988.
- Finn, Mary A./Suzanne Muirhead-Steves,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with violent male parolees". *Justice Quarterly* 제19
권, 2002.
- Padgett, K.G./Bales, W.D./Blomberg T.G, "Under Surveillance: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iveness and Consequences of Electronic
Monitoring", *Criminology & Public Policy* 제5권, 2006.
- Renzema, Marc/Evan Mayo-Wilson, "Can electronic monitoring reduce
crime for moderate to high-risk offender?"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제1권, 2005.
- Turner/Hess/Myers/Shan/Werth/Whitby,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 2007.
- Wilson, J. Q./Kelling, G, L., "Broken Windows :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제249호, 1982.

[Abstract]

Crime Prevention Through Electronic Surveillance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Shin-Kyo Jeong*

Recently,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are pouring out various measures for prevention of crime. Especially increase in violent crimes aggravates malaise factors of our society. Accordingly they are pouring out diverse measures that did not exist before.

Various policies to prevent crimes actually particularly such as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against specific criminals, chemical castration law, making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criminals public and establishment of law about use of DNA information are being enforced.

Presently various policies to prevent crimes are being prepared. Among them there is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being enforced since September 2007.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was introduced as effective control method against specific sexual offenders that are appeared as serious social problems recently.

Such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s meaning that criminal control system is newly established.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propelled in combination with order of attending class, order of treatment, service order and vocational training.

And in employment of the object of electronic surveillance, the interest

*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imcheon University.

without disadvantage or prejudice of local residents can help economic stability and rehabilitation of the object persons so adequate promotion of the correction authorities is also necessary.

Key Words : Prevention of Crim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Security Measure, Community Treatment, Location Tracking System